

평창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5
------	-----

제출년월일 : 2001. 3. 29
제출자 : 평창군수

□ 제안이유

- 법령에서 삭제된 행정규제 폐지

□ 주요골자

- 평창군 건축조례 제46조(온돌의 시공)를 삭제

□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관계부처승인 : 해당없음
- 라. 입법예고 : 별첨
- 마.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평창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부 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새 세기 신사고 활기찬 평창

평 창 군

우 232-8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 / 전화 (0374)330-2472 / 전송 (0374) 33 - 6356
처리 부서 : 도시과 건축계 (본층 3층) 과장 : 석명준 담당 최근익 실무 :

문서번호 : 도경58500 - 152

시행일자 : 2001. 1. 9

경유

받음 받는곳 참조

참조

보존기간		군 수
공개여부		
부군수	전 끝	
과 장	석명준	
기안자		협조
심사자		심사일

제목 평창군건축조례 개정에 따른 개정안 입법예고

건축법 개정으로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규제 사항을 폐지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 코자 불임과 같이 평창군건축조례를 개정코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읍면 게시판에 예고 하여 주시고 예고기간 종료 즉시 제출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기 바랍니다.

1. 조례명 : 평창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2. 예고장소 : 읍면·게시판
3. 예고일자 : 공고일로부터 20일

붙임 : 1. 입법예고문 1 부

2. 평창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1 부 끝

평 창 군 수

수신처 : 도 1~8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p>제46조(온돌의 시공) ① 법 제5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온돌 시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군수에 게 등록한 자(이하“온돌시공자”라 한다)가 하여야 한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60 제곱미터 이하인 온돌의 시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p> <p>2. 사단법인 온돌시공협회가 행하는 온돌 온돌시공 교육을 이수한자(온돌의 바닥면 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 한다)</p> <p>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은 건축물의 설 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과 건 설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시 공하여야 한다.</p> <p>③ 온돌시공자가 온돌의 시공을 완료한 경 우에는 당해 건축주 및 감리자에게 성명, 상호, 등록번호 및 시공내역, 하자보수기 간 등을 명시한 온돌시공확인서를 교부하 여야 한다.</p> <p>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에 의한 온돌 시공을 할 수 없다</p> <p>1. 당해 온돌 시공의 하자로 인하여 이명에 위해를 끼친 자,</p> <p>2. 온돌시공상 작은 하자를 야기 시키거나 하자에 대한 건축주의 정당한 보수요구에 불응한 자</p> <p>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온돌시 공 기술교육에 이수후 2년이내 동항 제1 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p>	<p>제46조 <삭제></p>

종	전	기
		정(1999.2.8) 후
		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99. 2. 8 개정)
<p>제54조【재해위험구역】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일·고조(高潮)·수해 기타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구역을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u>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위험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u></p> <p>③ 재해위험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시·군·구의</u> 조례로 정한다.</p>	<p>제54조【재해위험구역】 ① 허가권자는 해일·고조(高潮)·수해 기타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구역을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이 경우 재해위험구역은 재해위험의 정도에 따라 제1 중 내지 제3중 재해위험구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99. 2. 8 개정)</p> <p>② <u>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위험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u>(99. 2. 8 개정)</p> <p>③ 재해위험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당해 지방자치단체의</u> 조례로 정한다.(99. 2. 8 개정)</p> <p>④ 신설</p>	<p>제54조【재해위험구역】 ① 허가권자는 해일·고조(高潮)·수해 기타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구역을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이 경우 재해위험구역은 재해위험의 정도에 따라 제1 중 내지 제3중 재해위험구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99. 2. 8 개정)</p> <p>② <u>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위험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u>(99. 2. 8 개정)</p> <p>③ 재해위험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당해 지방자치단체의</u> 조례로 정한다.(99. 2. 8 개정)</p> <p>④ 재해위험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제47조·제48조·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99. 2. 8 본항신설)</p>
제7장 건축설비	제7장 건축설비	
<p>제55조【건축설비기준 등】 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과 그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56조【온돌의 구조 등】 ①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삭제(96. 12. 30)</p>	<p>제55조【건축설비기준 등】 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과 그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56조 삭제(99. 2. 8)</p>	<p>제55조【건축설비기준 등】 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과 그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56조 삭제(99. 2. 8)</p>
<p>제57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p> <p>② 높이 <u>31미터를</u>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외에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57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99. 2. 8 개정)</p> <p>② 높이 <u>41미터를</u>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외에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9. 2. 8 개정)</p>	